

의안 번호	제3715호
----------	--------

##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1월 17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2월 1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12월 1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12월 15일

### 2.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 나. 시장의 지도·감독(안 제4조)
- 다.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사이버보안 교육(안 제6조)
- 마.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안 제7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5조에서 사용된 ‘영’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선 조항에서 약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영’이 아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 있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안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인 보안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반의 보안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1부

#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715호
----------	--------

제출년월일 2025. 12.  
제출자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5조에서 사용된 ‘영’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선 조항에서 약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영’이 아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5조에서 기재된 ‘영’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수정

#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영 제8조”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5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장은 <u>영</u>  <u>제8조</u>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과 보안수준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제5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 「사  <u>이버안보 업무규정</u>」 <u>제8조</u>----          -----          -----.</p>